

#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0월 12일 김관수 의원 등 18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0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4년 10월 18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관수 의원)

### □ 제안이유

- 의제21(Agenda21) 제28장, 부천시환경기본조례 제19조 및 지방의제21 추진기구설치·운영및지원조례 표준준칙(환경부, 2004. 6. 21)에 의거 푸른 부천21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안 제3조)
  1. “푸른부천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단체·부천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 시장은 지방의제21 수립 및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도록 의무를 정함(안 제4조)
-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안 제5조)
- 협의회는 푸른부천21의 수립 · 추진 및 평가와 교육 · 홍보, 그리고 푸른부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 · 연구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 협의회 위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은 시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7조)
-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안에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장의 자격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총회와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0조)
- 협의회는 매년 다음해의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직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협의회 운영재원은 부천시의 보조금,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 시민의 성금,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으로 정함(안 제15조)
- 시장은 협의회에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운영비, 지방의제21 실천사업비, 기타 필요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보조금의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분기별로 신청 지급하고 사업비는 사업개시전에 지급하며, 사업완료시 정산하도록 함(안 제17조)
- 시장은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확인 ·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지방의제21 시장의 의무가 적절하지 않으며 이중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의무를 책무로 바꿀 수 있는지와 푸른부천21 너무 광범위하게 참여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환경분야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을 해도 무관한지에 대한 의견은?</p>	<p>○ 의무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책무는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의무를 책무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며, 환경이 지역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환경만 논할 수 없어 포괄적으로 의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p>
<p>○ 사무국 설치를 부천시에 둔다고 하는 것으로 개정의견을 집행부에서 건의했는데 부천시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p>	<p>○ 부천시에 둔다 함은 자세히 말하면 부천시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도 사무실 설치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시청에 두려는 것입니다.</p>
<p>○ 조례내용 중 재원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건의했는데 내용상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p>	<p>○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민관의 협력기구로서 기부금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 등 업무를 처리해줘야 합니다.</p>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제308호
의결 연월일	2004. 10. 22 (제115회)

제안년월일 : 2004년 10월 21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 중에서 문구나 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 또는 조정을 통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완

## 2. 주요골자

- 본 조례안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의무”와 제4조 “(시장의 의무)”,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의무)” 등에서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으로서 법률상의 인격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 해석되어 법률용어상 적절치 않으므로 “의무”를 “책무”로 수정. (안 제2장 제4조 및 제5조)
- 본 조례안 제7조 제2항의 “사회단체 회원”은 주민에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어 삭제.(안 제7조제2항)
- 본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사무국은 시 산하기관 및 공공청사 이외에 설치한다”를 업무의 효율성과 유기적 관계유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사무국은 부천시청내에 설치한다”로, 제3항의 “사무국은 국장과 직원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한다”를 “사무국은 국장과 직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 본 조례안 제15조 제1항의 제2호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을 “시민의 후원금”으로, 제3호 “시민의 성금”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 (안 제15조제1항)

#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장 제명중 “의무”를 “책무”로 한다.

안 제4조 제명중 “의무”를 “책무”로 한다.

안 제5조 제명중 “의무”를 “책무”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중 “사회단체 회원”을 삭제한다.

안 제8조제2항중 “시 산하기관 및 공공청사 이외에” 를 “부천시청 내에”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의제2호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을 “시민의 후원금”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u>의무</u></p> <p>제4조(시장의 <u>의무</u>)</p> <p>제5조(주민과 기업의 <u>의무</u>)</p> <p>제7조(구성) ① (생 략)</p> <p>②위원은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의 지방의 제21의 실천을 위하여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 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u>사회단체 회원</u>,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p> <p>제8조(사무국) ① (생 략)</p> <p>②사무국은 <u>시 산하기관 및 공공청사 이외에</u> 설치한다.</p> <p>③사무국은 국장과 직원을 포함하여 <u>2명</u> 이내로 한다.</p> <p>④(생략)</p> <p>제15조(재원) ① (생 략)</p> <p>1. (생 략)</p> <p>2. <u>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u></p> <p>3. <u>시민의 성금</u></p> <p>4. <u>협의회 회원의 후원금</u></p> <p>② (생 략)</p>	<p>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u>책무</u></p> <p>제4조(시장의 <u>책무</u>)</p> <p>제5조(주민과 기업의 <u>책무</u>)</p> <p>제7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 ----- ----- ----- ----- ----- ----- -----</p> <p>&lt;삭 제&gt;----- ----- ----- ----- -----</p> <p>제8조(사무국)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u>부천시청내에</u> ----- -----.</p> <p>③----- <u>3명</u> -----.</p> <p>④(제정안과 같음)</p> <p>제15조(재원) ① (제정안과 같음)</p> <p>1. (제정안과 같음)</p> <p>2. <u>시민의 후원금</u></p> <p>    <u>&lt;삭 제&gt;</u></p> <p>3. <u>협의회 회원의 후원금</u></p> <p>② (제정안과 같음)</p>

[수정안 포함]

부천시조례제 호

##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부천시환경기본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푸른부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푸른부천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3장 협의회 기능과 구성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푸른부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푸른부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푸른부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100인이내로 구성하며, 시의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8조(사무국) ①협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사무국은 부천시청내에 설치한다.

③사무국은 국장과 직원을 포함하여 3명이내로 한다.



④사무국장의 자격은 환경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환경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5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9조(위원회) ①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 안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회에서 정한다.

#### 제4장 협회의 운영

제10조(총회) ①협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협회장은 협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회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5조(재원) ①협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부천시의 보조금
2. 시민의 후원금
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②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시 환경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